

1. 주요국 동향

가. 개관

AI 사고 피해 구제 체계 및 요건에 관해 가장 선도적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있는 곳은 EU이다. EU는 세계 최초로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법인 AI Act를 제정하였고, 포괄적 AI 책임 법인 AILD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AI 사고의 특성을 반영하여 제조물책임지침을 개정하였다. EU 입법의 영향으로 우리나라도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캐나다에서도 AI & Data Act 법안이 발의되었다.

반면 미국은 상대적으로 법제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지는 않고 있다. 미국은 AI 이니셔티브법을 통해 AI 진흥에 관한 법적 체계를 마련하였으나, 규제나 책임에 관한 연방 차원의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다.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 각 부처에 과제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바이든 정부에서 발효된 AI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⁵⁷⁾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직후 폐기되고⁵⁸⁾ 진흥 정책 중심의 새로운 행정명령⁵⁹⁾이 발표되는 등의 상황을 볼 때 아직까지 법적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춘 규제 및 책임 체계를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방 차원의 포괄적 규제 프레임워크의 부재로 개별 주 차원에서 AI 관련 법안이 급증하고 법적·제도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

57) 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AI의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확보하고, AI 기술 발전에 따른 잠재적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최초의 포괄적 규제 조치로, 2023. 11. 1. 발효되어 2025. 1. 20. 트럼프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폐기되었음

58) Executive Order 14148, "Initial Rescissions of Harmful Executive Orders and Actions"; 2기 트럼프 정부는 임기 첫날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중 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기후·환경 규제, 이민·국경 정책 등에 관한 68개 행정명령을 폐지한바, 바이든 정부의 AI 관련 행정명령인 EO 14110도 폐지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다만 AI 데이터센터에 대한 연방 지원 정책만 유지하도록 하였음

59) Executive Order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업에 부과되는 안전성 평가·보고의무 등 규제를 중단하거나 재검토하고, 기업의 자율성과 혁신 환경을 강조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EO 14179를 발표하였음

황이라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⁶⁰⁾

일본의 경우 AI 개발·활용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AI 전략회의 및 AI 제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입법을 추진하기 보다 AI 도입에 따른 법제 정비 수요 등을 점검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 법제에 따라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등 산업 발전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중심으로 법제도 정비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⁶¹⁾

AI에 관해 주요국에서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AI 사고 책임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 EU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주요국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후 EU AI 관련 입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미국

1) 논의 경과

미국의 AI 관련 규제 논의는 2016년 10월 오바마 행정부가 'AI의 미래를 위한 준비 (Preparing for the Future of Artificial Intelligence)⁶²⁾'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본격화되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통해 AI의 경제적·사회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편향, 고용 구조 변화, 국가안보 위협과 같은 윤리적·법적 쟁점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규제 도입보다는 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학계·산업계·시민사회와의 지속적 대화를 통해 향후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2월 '미국의 AI 리더십의 유지' 행정명령 제13859호(이하 'E.O. 13859⁶³⁾'라 함)를 발령하여 본격적인 국가 전략을 수립하였다. 이 전략은 AI 연구개발에 대한 연방정부 지원 확대, 공공데이터 개방, 국제 협력 강화, 규제의 최소화를 핵심

60)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a), p. 25

61)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2025b), p. 14

62) White House(2016)

63) Executive Order 13859: Maintaining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으로 하여 미국을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 위치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2020년 3월 'AI 이니셔티브법'이 발의되었으며, 이 법은 AI를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경제와 안보를 지탱하는 국가 차원의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였다. 해당 법률을 통해 AI 연구·개발 및 정책 조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미국의 AI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틀이 마련되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 AI 위험관리와 사회적 신뢰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2023년 10월 '안전·안보·신뢰성 있는 AI 개발과 이용에 관한 행정명령(이하 'E.O. 14110'⁶⁴)이라 함)'을 통해 안전·안보·신뢰성 있는 AI 개발 및 이용을 범정부적 과제로 설정하였다. 이 명령은 안전과 안보, 혁신과 경쟁, 노동과 시민권 보호, 소비자 권익, 프라이버시 보장, 공공 부문 활용,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특히 생성형 AI와 이중용도 기반 모델의 위험 평가, 사이버보안 및 화생방핵(Chemical, Biological, Radiological, and Nuclear: CBRN) 위협 대응, 주요 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를 포함하였다. 이와 함께 공공 조달 확대 및 인재 유치를 통해 미국 내 AI 생태계를 강화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병행되었다. 바이든 정부의 접근은 포괄적이고 일률적인 규제보다는 각 부문과 맥락에 맞춘 맞춤형 규율 및 유연한 거버넌스를 지향한 것이 특징이었다.

반면 2025년 출범한 트럼프 행정부 2기는 바이든 정부의 E.O. 14110을 '급진 좌익적 발상'으로 평가하며 규제 중심의 접근을 철회하고,⁶⁵ 2025년 7월 'AI 액션 플랜(America's AI Action Plan)⁶⁶'을 발표하는 동시에 ① 연방정부 조달 시 편향 배제,⁶⁷ ② 데이터센터·반도체·에너지 설비 등 AI 인프라 구축 허가 절차 간소화,⁶⁸ ③ 미국 AI 기술 동맹국 수출

64) Executive Order 14110: Safe, Secure, and Trustworthy Development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65) Executive Order 14179: Removing Barriers to American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66) White House(2025)

67) Executive Order 14319: Preventing Woke AI in the Federal Government; 기술적 편향이 아닌 정치적·이념적 중립성을 연방정부가 조달하는 AI 시스템에 의무화하겠다는 뜻으로 대규모 언어모델(Large Language Model; LLM)이 특정 정치적·사회적 가치관에 편향되지 않도록 이념적 편향(Woke bias)을 차단하고 연방정부가 사용하는 AI는 객관적이고 사실에 기반한 응답을 제공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함. 이에 따라 정부 기관이 LLM 등을 구매 또는 활용할 때 공급업체는 자사의 AI가 객관적 진실(Objective truth)에 기반한 응답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증해야 함

68) Executive Order 14318: Accelerating Federal Permitting of Data Center Infrastructure; 5억 달러 이상 투자 또는 100MW 이상 전력 부하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AI 데이터센터·반도체·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NEPA) 등 적용되는 환경 규제를 완화하고, 연방 토지와 오염 부지를 활용하며, 대출·보조금·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함

및 경쟁국 제한⁶⁹⁾을 위한 세 가지 행정명령을 발령하며 경제 성장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 2025년 11월 AI 부문의 ‘맨해튼 프로젝트(Manhattan Project)’로 불리는 범정부적 이니셔티브 ‘제네시스 미션(Genesis Mission)’을 공식 출범⁷⁰⁾하는 등 AI 액션 플랜에 따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2) America’s AI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AI 액션 플랜은 크게 ① AI 혁신 가속화(Accelerate AI Innovation), ②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Build American AI Infrastructure), ③ 글로벌 AI 외교 및 안보 관련 리더십 확보(Lead in International AI Diplomacy and Security)의 세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로 ‘AI 혁신 가속화’ 부분에서는 연방 및 주 차원에서 규제를 최소화하고, 오픈소스 모델과 데이터셋 공유를 적극 장려하며, 연방정부 조달 시 ‘이념적 편향 없는 객관적 진실’을 기준으로 삼아 대규모 언어모델(LLM) 공급 요건을 재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규제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과 학계가 공공 영역 수요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경쟁력을 높이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 내 AI 인프라 구축’ 부분에서는 데이터센터, 반도체 공장, 에너지 설비 등 대규모 인프라 확충을 위해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연방 토지를 인프라 용도로 개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또한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동시에 확대하고, 직업 훈련과 산학 연계 교육,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을 통해 AI 전문 인력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병행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AI 외교 및 안보 관련 리더십 확보’ 부분에서는 동맹국과 AI 기술과 표준을 공유하여 민주주의 진영 내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 등 경쟁국에는 핵심 기술 접근을 제한하는 이중 전략을 채택하였다. 이를 통해 미국은 AI를 단순한 기술 경쟁 수단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 기반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AI 액션 플랜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희생하고 단기 성장 및 경쟁력 확보에만 집

69) Executive Order 14320: Promoting the Export of the American AI Technology Stack; 동맹국에 미국의 AI 기술(모델·반도체·데이터센터 인프라 등)을 적극 수출하고, 중국 등 경쟁국에 대해서는 첨단 AI 기술 접근을 차단하는 이중 전략을 명문화한 행정명령임

70) White House, LAUNCHING THE GENESIS MISSION(<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11/launching-the-genesis-mission/>) (2026. 2. 4. 최종 접속)

중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으며,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에 따른 환경 부담, 노동·소비자 보호 부족, 콜로라도주 AI법과 같은 주(州) 차원의 AI 규제와의 충돌 가능성⁷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AI 액션 플랜은 AI 기술 및 산업 진흥에만 중점을 두어 AI 사고에 대한 책임 및 피해 구제 내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AI 개발자 및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등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지 않다.

다. 영국

1) 논의 경과

영국은 2021년 9월 ‘국가 AI 전략(National AI Strategy)⁷²⁾’을 발표하여 향후 10년간 ① AI 생태계에 대한 장기적 투자 및 계획 수립을 통해 과학·AI 강국의 지위를 유지하고, ② AI 혁신의 혜택을 전 산업·지역으로 확장하며, ③ 적절한 국내외 거버넌스 확립을 통해 혁신과 투자를 장려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 전략은 장기적인 비전을 중심으로 인프라, 인재, 거버넌스 전반을 아우르는 기초 설계에 초점을 두었다.

영국 정부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AI 규제 체계 설계와 관련하여 심화된 논의를 진행하였고, 2023년 3월 ‘AI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A pro-innovation approach to AI regulation)⁷³⁾’이라는 제목의 AI 백서를 발표하였다. 이 백서는 EU AI Act와 같은 포괄적 단일 법률이 아닌 원칙 중심의 부문별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는데, AI의 안전하고 혁신적인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5가지 원칙으로 ① 안전, 보안 및 견고성(Safety, security and robustness), ② 투명성 및 설명 가능성(Appropriate transparency and explainability), ③ 공정성(Fairness), ④ 책임 및 거버넌스(Accountability and governance), ⑤ 경쟁 가능성 및 보상(Contestability and redress)을 명시하였다. 또한 AI 혁신을 저해하는 강압적인 법안을 피하고, 새로운 단일 규제기관을 만드는 대신 기존에 있던 관련 기관들에 권한을 부여하여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접근 방식을 제시하였다.

71) 콜로라도주 AI법(SB 24-205, Colorado AI Act)은 AI에 대해 강력한 책임 및 투명성 요건을 부과하고 포괄적 규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AI 액션 플랜은 연방 차원의 규제 완화 정책을 포함하고 있어 주 차원의 규제 조치를 과도한(Burdensome) 규제로 간주함

72) HM Government(2021); 해당 전략은 AI가 COVID-19 대응에 기여하였음을 언급하며, NHS와 같은 보건 분야에도 혁신적인 AI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에 따라 NHS AI 연구소(NHS AI Lab)는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AI 국가 전략(National Strategy for AI in Health and Social Care)’을 수립함

73)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DSIT)(2023a)

2023년 하반기 영국 정부는 고위험·범용 AI(Frontier AI)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프런티어 AI 태스크포스(Frontier AI Taskforce)’를 출범하였다.⁷⁴⁾ 이 조직은 프런티어 AI의 잠재적 위험을 연구하고 사전평가하는 기능을 전담하며, 국가 차원의 안전 관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같은 해 11월, 영국은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AI Safety Summit)를 주최하고 ‘블레츨리 선언(Bletchley Declaration)⁷⁵⁾’을 채택해 다수 국가 간 프런티어 AI의 위험 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마련하였다. 이를 계기로 프런티어 AI 태스크포스가 ‘AI 안전연구소(AI Safety Institute; AISI)’로 격상되었으며, AI 관련 평가 및 검증 등에 관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 되었다.⁷⁶⁾

이외에도 경쟁시장청(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은 2023년 ‘기초모델 경쟁·소비자 영향 분석⁷⁷⁾’을 실시하고 2024년 2차 보고서를 통해 경쟁·소비자보호 원칙을 제시하였으며⁷⁸⁾ 정보위원회(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 ICO)는 2023년 ‘AI와 데이터 보호 가이드라인(Guidance on AI and data protection)⁷⁹⁾’을 개정하여 AI 개발·운영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원칙과 법적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2023년 제정된 ‘온라인 안전법(Online Safety Act)’은 AI 생성 콘텐츠를 포함한 불법·유해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플랫폼의 의무를 규정하였다.

영국은 이상의 정책 및 제도적 대응을 축적해 나가며 AI 관련 영국의 독자적 규제모델을 형성하였고, 이를 반영하여 2025년 1월 AI 산업 및 인프라 육성을 위한 실행 계획인 ‘AI 기회 행동 계획(AI Opportunities Action Plan)⁸⁰⁾’을 발표하였다.

74)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DSIT)(2023b);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DSIT)(2023c)

75)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DSIT)(2023d)

76) UK Government(2023)

77) CMA(2023)

78) CMA(2024); Initial Report에서 7대 원칙으로 책임(Accountability), 접근성(Access), 다양성(Diversity), 선택권(Choice), 유연성(Flexibility), 공정 거래(Fair dealing), 투명성(Transparency)이 제안되었으나, ‘유연성’이 ‘선택권’으로 통합되어 최종적으로 6대 원칙이 제시됨

79) ICO(2023); 2025년 6월 발효된 ‘Data(Use and Access) Act’에 따라 변경 검토 중임

80) Department for Science, Innovation & Technology(DSIT)(2025)

2) AI opportunity action plan의 주요 내용

AI 기회 행동 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 전반에 걸쳐 AI 역량을 확장 및 심화하기 위해 마련된 종합 실행 전략으로,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 확대, 인재 확보 및 규제 혁신 등 AI를 최적으로 설계하기 위한 50가지 실행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영국 정부는 동 계획에서 ① AI 활성화 생태계 조성, ② 공공·민간 분야의 AI 활용 가속화, ③ 자주적인 AI 추진이라는 세 가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먼저 첨단 AI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국가 AI 연구소 및 대학·산업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기초·응용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AI 연구자원(AI Research Resource: AIRR)의 수용력을 확대하고, AI 데이터센터 구축 가속화를 위해 AI 성장구역(AI Growth Zones: AIGZs) 조성 계획을 밝혔다. 또한 고품질 데이터의 확보 및 제공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부문을 장려하고, AI 생태계에 필요한 전문 인재를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확대 및 인재 유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전 산업 및 공공 부문의 AI 도입 가속화를 위해 정부 조달, 시범 사업, 국책 과제를 통해 공공 부문이 초기 수요를 창출하며, 이를 민간 확산의 발판으로 삼고자 하였다. 특히 정부가 탐색(Scan) → 시험 적용(Pilot) → 대규모 확산(Scale)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영국 내 스타트업 및 혁신 생태계를 지원하고,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을 강조하며, AI 도입을 통해 지역별·기업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수동적으로 AI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 자주적인 AI를 개발하여 최첨단 AI 분야에서 영국의 점유율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UK Sovereign AI를 창설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이 부서는 민간 및 학계가 국제 협력과 합작 투자, 육성 등을 통해 각각의 강점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Innovate UK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회사의 설립, 스타트업 규모 확장, AI 기술 발전 등에 투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본 계획은 영국 정부가 AI에 대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히고 있으나, AI 사고에 따른 책임 규명이나 피해 보상 절차, 개발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법적 제재와 관련된 내용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 AI 관련 포괄적 규제에 해당하는 법안

인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⁸¹⁾가 상원에 발의되어 있으나, 정부 주도 입법이 아니라 의원 개인 발의 입법이라는 점 및 AI 혁신 친화적이고 기업 우호적인 영국 정부 정책 방향과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⁸²⁾ 영국 정부는 2026년 포괄적 AI 패키지 법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하였으나 아직 초안이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며, 패키지에 AI 사고 책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국 법률위원회(Law Commission)는 AI 도입 및 활용을 고려한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검토 중에 있으며, 주된 쟁점은 EU의 개정 PLD와 대체로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⁸³⁾

라. 일본

1) 논의 경과

일본의 AI 관련 제도 논의는 2015년 12월 ‘Society 5.0’ 개념의 구상에서 출발하였다.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第5期科学技術基本計画)⁸⁴⁾’에서 처음 제시된 이 비전은 물리적 공간과 사이버 공간이 통합된 초연결·초스마트 사회 실현을 위해 AI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국가 차원에서 AI의 연구개발 및 사회적 활용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후 2021년 9월, 일본 정부는 국가 디지털 전환의 컨트롤타워로 디지털청(デジタル庁)을 출범⁸⁵⁾시키고 공공서비스와 사회 인프라 전반에서 AI 활용 기반을 확충하기 시작하였다.

국제적으로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ChatGPT 등 생성형 AI가 사회적 논의를 촉발한 2023~2024년 무렵, 일본 내에서도 AI의 잠재적 위험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AI 규제 필요성 논의가 대두되었다. 2023년 5월 일본 정부는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

81) UK Parliament, Artificial Intelligence (Regulation) Bill [HL](<https://bills.parliament.uk/bills/3942/>) (2026. 2. 4. 최종 접속)

82) Clyde&Co(2025), “The relaunched UK AI Regulation Bill – a step towards statutory regulation of AI in the UK? Insight Article”(<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5/03/the-relaunched-uk-ai-regulation-bill-a-step-toward>) (2026. 2. 20. 최종 접속)

83) Clyde&Co(2024), “Product Liability legislative reforms: A snapshot of the UK’s position”(<https://www.clydeco.com/en/insights/2024/12/product-liability-legislative-reforms>) (2026. 2. 20. 최종 접속)

84) 内閣府(2016)

85) ‘디지털청설치법(デジタル庁設置法)’에 따라 설립된 정부 기관으로, 법 자체에 ‘AI(人工知能)’라는 용어가 직접적으로 등장하지 않으나 디지털 사회의 형성, 정보 시스템의 정비, 행정의 디지털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시를 포함한 최신 ICT 기술 활용에 관한 부분이 업무 범위 중 하나임

세스(広島AIプロセス)를 발족시켰고, 이후 이 프로세스는 49개국과 지역이 참여하는 자발적 국제 협력체로 발전하여 AI 거버넌스의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2024년 4월에는 일본전신전화 주식회사(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NTT)와 요미우리신문이 생성형 AI의 규제 및 조치 필요성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⁸⁶⁾하며 정부에 제도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일본은 법률보다는 가이드라인 중심의 '소프트 로(Soft law)' 접근을 유지하였다. 총무성(総務省)은 '국제적인 논의를 위한 AI 개발 가이드라인(国際的な議論のための AI 開発ガイドライン案)⁸⁷⁾, 'AI 활용 가이드라인(AI 利活用ガイドライン)⁸⁸⁾, 'AI 활용 가이드라인: AI 활용을 위한 실질적인 레퍼런스(AI 利活用ガイドライン~AI 利活用のためのプラクティカルリファレンス~)⁸⁹⁾를, 경제산업성(経済産業省)은 'AI 원칙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가이드라인 Ver. 1.1(AI 原則実践のためのガバナンス・ガイドライン Ver. 1.1)⁹⁰⁾ 등을 공표하였으며, 2024년 4월에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AI 사업자 가이드라인(AI 事業者ガイドライン案)⁹¹⁾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수집 및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및 의료 분야 등에서 법적 공백 및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2025년 6월 일본은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을 제정·공표하였다.

2)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일본의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일본 AI 법'이라 함)'은 AI 관련 국가의 기본 방침을 정하는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일본 최초의 AI 종합 기본법으로, AI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사회적 활용까지 국가 차원에서 종합적·체계적 AI 활용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 이념과 시책, 추진 체제를 규정한다.

86) 株式会社読売新聞グループ本社, 日本電信電話株式会社(2024)

87) AI 네트워크 사회推進會議(2017)

88) AI 네트워크 사회推進會議(2019a)

89) AI 네트워크 사회推進會議(2019b)

90) AI 原則の実践の在り方に関する検討会, AI ガバナンス・ガイドライン WG(2019)

91) 総務省, 経済産業省(2024); 현재는 2025. 3. 28. 개정된 1.1판이 최신 버전임

법률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장과 제2장은 2025년 6월에 시행되었고, 제3장과 제4장은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제1장 '총칙'에서는 법률의 목적과 AI 관련 기술의 정의, AI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의 추진을 위한 기본 이념 및 국가, 지자체, 연구개발 기관, AI 활용 사업자 및 국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제2장 '기본적 시책'에서는 연구개발 환경 조성 및 데이터 및 인프라 확충, 인재 양성, 윤리 및 적합성 확보, 국제 협력 등에 관해 규정하며, 제3장(제18조)에서는 정부의 AI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한다. 제4장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AI 전략본부를 설치하도록 하여 부처 간 조정, 기본계획 실행, 협력 등을 총괄하도록 하였다.

일본 AI 법은 EU의 'AI Act'처럼 금지 규정이나 제재 규정을 중심으로 한 규제형 법률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방향과 행정 조직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기본법 성격이 강하며, AI 활용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우려를 균형 있게 반영하면서도 혁신 촉진을 저해하지 않는 소프트 로(Soft law) 접근 방식을 유지한 것이 특징이다. 즉, AI 관련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이나 피해 구제에 관한 내용 또는 AI 사업자에 대한 제재 등에 대한 조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제7조에서 '활용 사업자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국가 정책에 대한 협력 의무에 관한 것으로 위반 시 벌칙이나 제재 조항은 없다.

마. 소결

주요국이 다양한 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AI 사고 책임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현재 EU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EU AI 관련 입법의 체계와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표 IV-1〉 주요국 AI 법제 동향(요약)

국가명	주요 동향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오바마 행정부의 '인공지능의 미래를 위한 준비' 보고서를 통해 규제 논의 본격화 • 2019년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의 AI 리더십 유지 행정명령을 통해 국가 전략 수립(정부 지원 확대, 규제 최소화) • 2023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안전, 안보,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개발과 이용에 관한 행정명령 발표 • 2025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바이든 정부의 행정명령 철회 및 AI 산업 발전 및 국제 경쟁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

〈표 IV-1〉 계속

국가명	주요 동향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국가 AI 전략을 발표하여 장기 투자 계획 수립 • 2023년 'AI의 규제에 대한 혁신적 접근 방식'을 발표하여 원칙 중심 부문별 규제 방식 제시 • 2023년 하반기 고위험, 범용 인공지능 확산 대응을 위한 프런티어 AI 태스크포스 출범 • 2023년 11월, 제1회 AI 안전 정상회의 주최 및 블레츨리 선언 채택으로 AI 위험 평가 및 안전성 연구를 위한 국제 협력 체계 마련 • 2025년 산업 및 인프라 육성을 위한 AI 기회 행동 계획 발표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제5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서 AI 관련 제도 논의 시작 • 2023년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히로시마 AI 프로젝트 발족(49개국 참여 AI 거버넌스 글로벌 프레임워크 구축 목표) • 연성규제 중심 규제 마련(AI 활용 가이드라인, AI 원칙 실천을 위한 거버넌스 가이드라인, AI 사업자 가이드라인 등) • 2025년 6월,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진흥법) 제정

2. EU AI 관련 입법 현황

EU의 AI 법제는 사고에 대한 사전 예방 수단인 규제법과 사후 구제 수단인 책임법으로 구분된다. 입법 순서상으로는 규제법이 먼저 정비되었고 책임법은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법제 내용상으로는 규제법에서 정해진 AI 사고 위험, 이해관계자의 역할과 책무를 전제로 책임법 논의가 이어지고 있기도 하고, 역으로 책임법에 대한 고려가 규제법 내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EU AI 법제의 핵심은 EU AI Act이다. AI Act는 AI가 활용되는 모든 영역에 적용되는 포괄적 규제법이다. AI Act는 위험도에 따라 AI를 4등급으로 분류하여 차등 규제를 적용하는 '위험 기반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특히 고위험 AI 개발 및 활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AI Act는 회원국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규정(Regulation)'에 해당하므로, 회원국의 별도 조치 없이도 자동 적용된다. AI Act는 2024년 8월 발효되었으나, 항목별로 시행 시기가 달라 발효 후 2년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험 AI에 대한 규제는 2026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시행 시기를 뒤로 미루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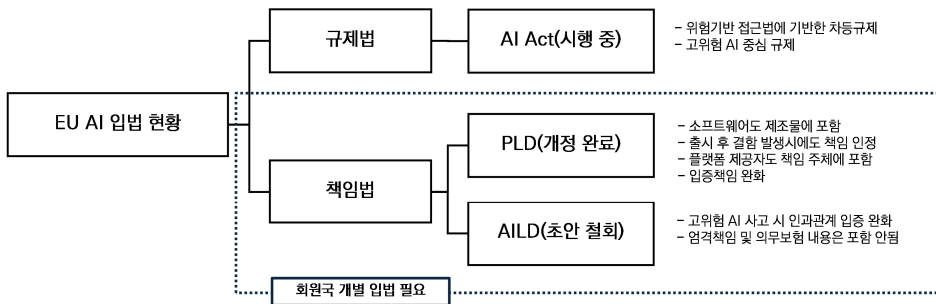
92) <https://www.europarl.europa.eu/news/en/press-room/20260323IPR38829/artificial-intelligence-act-delayed-application-ban-on-nudifier-apps> (2026. 4. 8. 최종 접속)

EU AI 책임법에는 개정 제조물책임지침(Product Liability Directive; PLD)과 AI 책임지침(AI Liability Directive; AILD)(초안)이 있다. 2024년 12월 발효된 개정 PLD는 AI 사고 발생 시 제조물책임 법리를 통해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법제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 PLD의 핵심은 디지털 신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다. PLD는 회원국이 그 취지에 따라 국내법 개정 의무를 부담하는 '지침(Directive)'에 해당하며, 회원국들은 발효 후 2년이 되는 시점인 2026년 12월 9일까지 개정 PLD의 취지에 따라 자국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2022년 9월 발표된 AILD 초안은 AI 사고에 대한 포괄적 책임법제로, AI에 의한 불법행위 상황 발생 시 책임 인정의 요건을 정하고 있다. 특정 위험원에 대한 별도의 책임법이라는 점에서 자배법, 원자력손해배상법 등과 유사하다. 법적 효력은 PLD와 마찬가지로 회원국 국내법 개정을 요하는 지침에 해당한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AILD 초안을 공식적으로 철회하였으나, 관련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EU AI Act, 개정 PLD 및 AILD 초안의 내용을 살펴보고, EU의 AI 관련 법제의 체계와 내용이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림 IV-1〉 EU AI 관련 입법 현황



3. EU AI 규제법: AI Act

가. 개관

EU는 2018년경부터 AI 관련 법제 정비 논의를 시작하여, 먼저 2019년 연성규범인 윤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후 유럽 집행위원회는 AI 규제 방안을 보다 구체화한 AI 백서를 발표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2021년 AI Act 초안을 발표하였다. 초안에 대해 의회 및 회원국들의 논의를 거쳐 AI Act 최종안이 승인되었고 2024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AI Act는 전문 180개 호와 113개 조항 및 13개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책임법제 논의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⁹³⁾

〈표 IV-2〉 AI Act의 구성

장	제목		조항	시행일
제1장	일반조항		제1조~제4조	2025년 2월
제2장	금지되는 AI		제5조	2025년 2월
제3장	고위험 AI	(1) 고위험 AI 시스템 분류	제6조~제7조	2026년 8월
		(2) 고위험 AI 시스템의 요건	제8조~제15조	2026년 8월
		(3)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 배포자 기타 관련자들의 의무	제16조~제27조	2026년 8월
		(4) 관할 당국 등에 대한 통지	제28조~제39조	2025년 8월
		(5) 표준, 적합성 평가, 인증서, 등록	제40조~제49조	2026년 8월
제4장	특정 AI 시스템 제공자 및 배포자의 투명성 의무		제50조	2026년 8월
제5장	범용 AI 모델	(1) 분류 기준	제51조~제52조	2025년 8월
		(2)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제53조~제54조	2025년 8월
		(3) 시스템 위험이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의 의무	제55조~제56조	2025년 8월
제6장	혁신지원 조치		제57조~제63조	2026년 8월

93) EU AI Act의 내용 및 시사점에 대한 분석은 심소연(2024) 및 채은선(2024)을 참고 바람; EU AI Act 전문 번역은 국회도서관 버전과 한국법제연구원 버전이 있음

〈표 IV-2〉 계속

장	제목		조항	시행일
제7장	거버넌스	(1) EU 거버넌스	제64조~제69조	2025년 8월
		(2) 국가별 관할 당국	제70조	2025년 8월
제8장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EU 데이터베이스		제71조	2026년 8월
제9장	판매 후 모니터링, 정보 공유 시장 관찰	(1) 판매 후 모니터링	제72조	2026년 8월
		(2) 중대한 사고에 대한 정보 공유	제73조	2026년 8월
		(3) 시행	제74조~제84조	2026년 8월
		(4) 구제 수단	제85조~제87조	2026년 8월
		(4) 범용 AI모델 제공업자에 대한 감독, 조사, 집행 및 모니터링	제88조~제94조	2026년 8월
제10장	자율 협약 및 지침		제95조~제96조	2026년 8월
제11장	권한 위임 및 위원회 절차		제97조~제98조	2026년 8월
제12장	벌칙		제99조~제101조	2025년 8월
제13장	최종 조항		제102조~제113조	2026년 8월
부속서	-		I ~ XIII	-

주: 고위험 AI 관련 규제 등 일부 항목은 시행 시기가 연기될 예정임
 자료: 심소연(2024), p. 2를 참고하여 일부 보완함

AI Act 전문은 AI 시스템의 개발,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및 사용에 대한 통일된 법적 프레임워크를 마련하여 유럽 연합 내부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는 것이 법 제정의 목적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가치에 따라 인간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AI의 도입을 촉진하면서도 건강, 안전,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에 명시된 기본권(민주주의, 법치주의, 환경 보호 포함)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⁹⁴⁾

한편 AI Act는 AI 관련 주요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바, 앞서 본 AI 시스템 외에도 범용 AI 시스템(General purpose system), 공급자(Provider), 운영자(Operator), 배치자(Deployer) 등 주요 개념을 정의하는 한편, 각 위험 유형별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94) AI Act Recitals (1)

〈표 IV-3〉 AI Act의 주요 개념

주요 개념	의의
AI 시스템 (AI System)	다양한 수준의 자율성을 가지고 작동하도록 설계된 기계 기반 시스템으로, 배포 후 적응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명시적·묵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입력된 정보로부터 예측, 콘텐츠, 추천 또는 결정을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을 추론하는 것을 의미함
공급자 (Provider)	유상 또는 무상으로 AI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개발된 AI 시스템을 소유하면서 자신의 명의 또는 상표로 이를 시장에 출시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대행기관, 기타 법적 주체를 지칭함
배포자 (Deployer)	자신의 권한에 근거하여 AI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공공기관, 대행기관, 기타 법적 주체를 총칭함. 단, 사적이고 비업무적인 활동 과정에서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함(*기존 발표된 초안에서는 'use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최종 채택된 법 규정에서는 'deployer'로 변경됨)
운영자 (Operator)	공급자, 제조업자, 배포자, 수권대리인, 유통업자, 수입업자를 총칭함

자료: AI Act Article 3

나. 위험 기반 접근법

1) 개관

EU AI Act의 핵심 내용은 AI를 위험도에 따라 구분하여 차등 규제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EU AI Act는 AI의 위험수준을 금지되는 AI, 고위험 AI, 제한적 위험 AI, 최소 위험 AI로 구별하고,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시스템 요건을 부과하고 제공자·배치자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강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고위험 AI는 자동차, 의료기기와 같이 기존에도 강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분야에 AI가 적용되는 경우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큰 영역에서 AI가 활용되는 경우로 구분된다. 전자의 경우는 기존 안전규제와 AI Act 규제가 중첩 적용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EU AI Act에 의해 비로소 규제 대상이 된다. 범용 AI 모델에 대해서는 시스템 위험이 있는 경우 모델 평가, 정보 기록, 보고 등의 추가적인 의무가 부과된다. 이상과 같은 EU AI Act의 내용은 다음에 살펴볼 PLD와 AILD의 전제가 된다. PLD와 AILD는 EU AI Act의 위험 기반 규제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특히 고위험 AI에 대한 책임법제적 대응을 모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2) 위험도에 따른 AI 구분

가) 금지되는 AI

금지되는 AI는 말 그대로 개발이나 이용이 금지되는 AI를 의미한다. ① 인간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거나, 조작·기만을 위한 기술, ② 인간 행동 왜곡을 목적으로 개인의 취약성을 이용하는 기술, ③ 사회적 점수(Social scoring)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를 평가하거나 분류하는 기술, ④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하거나 예상하기 위한 기술(객관적 사실에 입각하여 평가하는 경우는 허용), ⑤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안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확장하는 기술, ⑥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의 감정추론 AI, ⑦ 민감정보(인종, 정치적 성향, 노조 가입, 종교, 신념, 성적지향) 추론을 위해 생체인식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간을 분류하는 시스템, ⑧ 법 집행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하는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 이용(인신매매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 등이 이에 해당한다. 유형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도 있어 완전히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고위험 AI에 비해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현저히 높기 때문에 금지되는 AI로 분류된다.

나) 고위험 AI

EU AI Act의 핵심 규제 대상인 고위험 AI는 크게 두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에 EU의 안전 관련 규제의 적용을 받는 위험군에 해당하는 제품에 AI가 장착된 경우이다. 기계, 장난감, 선박, 승강기, 폭발 관련 장비, 전파장비, 압력장비, 공중케이블, 개인보호장구, 가스기기, 의료기기, 항공기, 이륜차, 농기구, 해양장비, 철도, 자동차 등이 이에 해당하며, AI Act 부속서 I에 열거되어 있다. AI 탑재 여부와 관계없이 본래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어 엄격한 안전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AI 이용 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어 AI Act 부속서 III에서 고위험 AI로 분류한 경우이다. ① 원격 생체 식별, ② 핵심 기반 시설, ③ 교육 및 직업 훈련, ④ 고용, 근로자 관리, 자영업, ⑤ 필수 공공서비스, 민간서비스(신용도평가-금융사기 적발 제외, 생명 및 건강보험 관련 위험 평가), ⑥ 법 집행, ⑦ 이민, 망명, 국경통제, ⑧ 사법행정, 선거, 투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위 항목에 해당하더라도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건강,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해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위험 AI에서 제외될 수 있다.

고위험 AI로 분류되는 경우, AI Act에서 정한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공급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배포자에게 일정한 의무가 부과된다. AI 시스템 요건으로 위험관리체계 수립·이행, 데이터 거버넌스 구축 및 데이터 관리, 기술문서 작성, 로그 관리, 배포자에 대한 투명성 및 정보 제공 등이 요구된다. 이러한 요건의 준수는 공급자가 보장하여야 한다. 한편, AI 공급자는 품질관리 체계 마련, 문서 관리, 로그 보관, 시정조치 및 정보 제공, 관할 당국과의 협력, 적합성 평가 절차 이행, 적합성 보증에 서명하고 이를 제품에 표시할 의무를 부담한다.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시장 출시 전 적합성 심사 조치들의 이행을 확인할 의무를 부담한다. 배포자는 고위험 AI 시스템 사용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고, 인간에게 AI를 감독하도록 해야 하며, 사업장 사용 전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공공기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단체 및 신용평가나 생명보험 위험평가를 실시하는 배포자의 경우 해당 시스템의 사용으로 인한 기본권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다) 제한적 위험 AI

제한적 위험 AI는 크게 4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투명성 의무가 부과된다. ① 자연인과 직접 상호작용하기 위한 AI 시스템(챗봇)의 경우 AI임을 표시해야 한다. ② 범용 AI 포함 생성형 AI는 그 결과물이 AI에 의해 생성됨을 표기해야 한다. ③ 감정인식 시스템, 생체인식 분류 시스템의 경우, 해당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④ 딥페이크 생성 AI 시스템의 경우, AI 배치자는 라벨링 등을 통해 딥페이크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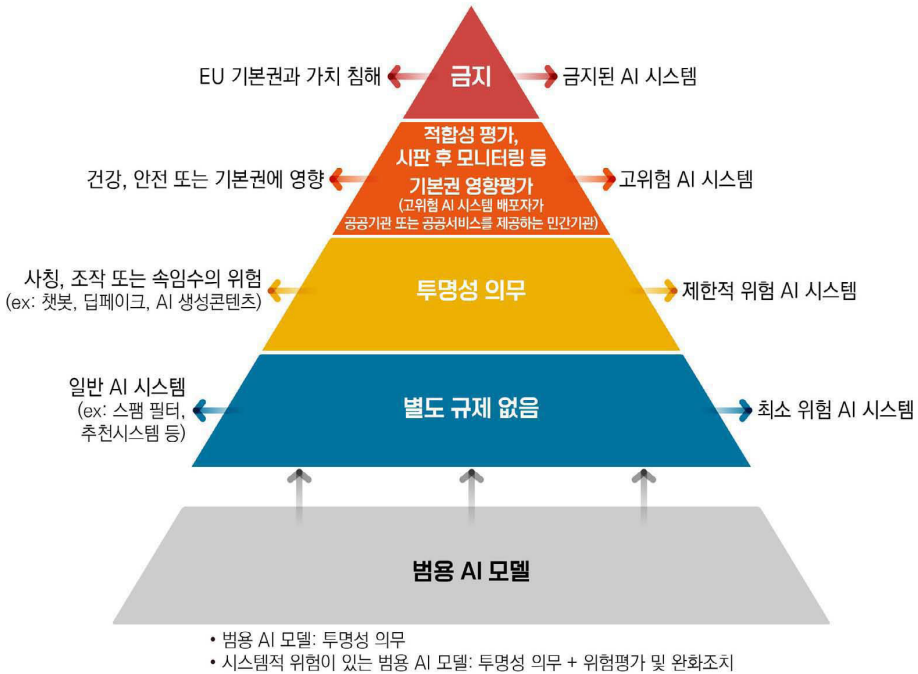
라) 최소 위험 AI

이상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AI 시스템은 원칙적으로 별도 규제 없이 자유롭게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다. 다만, EU는 이러한 영역에 대해서도 자율규제 마련을 장려하고 있다.

마) 범용 AI 모델

AI Act는 범용 AI 모델의 경우 공급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한다. 범용 AI 모델 제공자는 기술문서 작성 의무, 범용 AI를 자신의 AI에 통합하고자 하는 공급자를 위한 정보 제공 및 문서 작성 의무, 저작권법 준수 정책 마련 및 AI 학습용 콘텐츠 관련 정보 공유 의무 등을 부담한다. 한편,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범용 AI 모델의 제공자는 구조적 위험을 파악하고 경감하는 관점에서 모델을 평가하여야 하고, 해당 모델에 의해 발생 가능한 시스템적 위험을 평가하고 감경시켜야 하며, 중대한 사고 정보 및 이에 관한 시정조치를 기록 및 보고하여야 하고, 보다 높은 사이버 보안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그림 IV-2〉 AI 시스템 위험도에 따른 차등 규제



자료: 심소연(2024), p. 3

4. EU AI 책임법: PLD 및 AILD

가. 개관

AI 책임법 관련 논의는 크게 AI 사고에 대해 기존의 책임법제로 대응할 것인지, 아니면 AI 사고에 대한 별도의 책임법제를 마련할 것인지로 나누어진다. 초기에는 AI 사고의 특수성 및 기존 책임법제의 한계에 주목하여 AI 사고에 대한 별도 책임법제 마련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AI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AI 사고에 대해 특정 이해관계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하는 논의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논의가 진행될수록 AI 사고에 대한 책임법제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이 드러났고, AI 기술 발전 단계를 고려할 때에도 별도 책임법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대두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EU는 2025년 기존 책임법제를 일부 수정·보완함으로써 AI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완료하였다. AI 사고의 책임주체 불명확성 및 입증 곤란성을 고려하여 기존 책임법제인 PLD를 개정하여 책임주체를 확대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였다. 반면, 별도 책임법제에 해당하는 AILD는 논의 초기에 제안되었던 것에 비해 상당히 축소된 내용으로 초안이 마련되었고 그마저도 관철되지 못하고 최근 철회되었다. 이하에서는 AI 책임법제에 관한 EU의 논의 경과를 살펴보고, 개정 PLD의 내용 및 AILD 초안의 내용을 정리해 보기로 한다.

나. 논의 경과

1) 2019년 EU 집행위원회 산하 전문가그룹 EG-NTF 보고서 발표

가) 개관

EU의 AI 책임법 논의의 기초가 된 것은 집행위원회 산하 전문가 그룹인 'Expert Group on Liability and New Technologies-New Technologies Formation(EG-NTF)⁹⁵⁾가 2019년 발

95) EG-NTF는 EU 집행위원회가 2018년 설립한 독립 전문가 그룹으로,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분산원장기술 등 신기술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를 연구하고 기존 법체계의 적합성을 검토하여 개선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집행위원회는 'Expert Group on liability and new technologies'라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동 그룹 내에 'Product Liability Directive(PLD) Formation'과 'New Technologies Formation'이라는 두 개

간한 'Liability for Artificial Intelligence and Other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이다. EG-NTF(2019)는 AI를 비롯한 신형 디지털 기술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과 피해에 대해 기존의 법률 체제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지를 점검하고, 원활한 피해 보상, 공정한 책임 배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총 18의 쟁점에 대해 34개의 핵심 내용(Key-findings)을 제시하였다. AI 사고에 대해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하는 방안, 제조물책임 확대 방안, 입증 책임 전환 및 완화 방안, 보험가입 의무화 방안 등이 핵심 내용이다.

나) 기존 책임법제의 한계 및 AI 책임법제의 기본 전제

EG-NTF(2019)가 AI 사고 관련 기존 책임법제의 한계로 지적한 사항은 크게 3가지이다. 첫째, 기존 책임법제로는 AI 사고로 인한 손실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분배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위험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고 유발 행위를 한 자, 위험원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 위험원을 관리하는 자, 최소 비용으로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자, 최소 비용으로 보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 등을 책임주체로 고려해 볼 수 있다. 책임법은 이들에게 손실을 적절히 배분하는 기능을 해야 한다. 그런데 AI 사고는 책임주체가 불명확한바, 기존 책임법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손실 배분에 불공정이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개인의 권리에 발생하는 위험에 대해 법체계가 일관성 있는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할 수 있다. 예컨대, 피해의 종류나 크기가 동일함에도 그 원인이 인간의 행위나 기존 기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AI 등 신기술에 의한 것인지에 따라 권리 구제의 절차 및 결과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효과적인 사법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 특히 AI 사고의 경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⁹⁶⁾ EG-NTF(2019)가 제시하고 있는 3가지 기존 책임법제의 한계점은 앞서 본 AI 사고 관련 책임법제의 책임주체 및 입증책임 문제와 관련된다.

이러한 한계점에 대한 고려는 AI 사고의 특성을 고려한 책임법제 정비 필요성에 대한 검토로 연결된다. AI 책임법제 정비는 기존 책임법제의 수정·보완과 새로운 책임법제 마련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EG-NTF(2019)는 AI 사고 책임법제 정비의 기본 전제(Bases of liability)로 3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동일한 책임 체계가 적용되어

의 소그룹을 두었으며, 그중 New Technologies Formation(NTF)은 신기술 관련 책임법의 원칙 및 지침 개발을 담당하였음. 현재는 활동이 종료되었음

96) EG-NTF(2019), p. 34

야 한다. 이는 책임의 근거뿐 아니라 손해의 유형 및 보상 범위를 정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둘째,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이 함께 적용되어야 한다. 두 가지 책임이 모두 성립되는 경우 피해자는 각 책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복수의 책임자들은 공동불법행위자(Multiple tortfeasors)로 본다. 셋째, 특정 영역의 사고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과는 별도로 계약상 책임(Contractual liability)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 체계⁹⁷⁾가 적용되며,⁹⁸⁾ 기존 책임법제 수정·보완 시 이러한 여타 보상 체계를 고려하여야 한다.

요컨대 AI 책임법제는 책임 배분의 공정성과 효율성, 피해 구제의 일관성과 적절성, 사법 시스템의 접근성과 실효성 관점에서 기존 책임법제가 AI 사고 대응 수단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동일한 위험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적용하고,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을 병용하며, 계약책임 및 기타 보상 체계와 불법행위책임의 역할 배분을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엄격책임(운영자 엄격책임 신규 도입, 제조업자 엄격책임 강화)

EG-NTF(2019)가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한 책임법 이슈는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이다. AI 사고의 책임주체의 불명확성과 사고 원인 규명 곤란성을 고려할 때, 위험원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특정인에게 고의·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적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AI 책임 논의 초기에는 AI 자체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방안이 검토되기도 하였으나, 적어도 책임법의 한계 때문에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현재의 중론이다.

EG-NTF(2019)는 운영자와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먼저 AI 운영자에 대한 엄격책임 부과 방안을 살펴보자. AI 운영자(Operator)는 AI의 운영과 관련된 위험을 통제하고 그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한다.⁹⁹⁾ 우리나라 자배법

97) 불법행위책임 외에 다른 형태의 책임을 의미하며, 계약상 책임,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음

98) 예컨대, 오스트리아의 경우 제조물 결함에 의한 사고의 피해자가 제조업자에게 직접 책임을 묻는 방법으로 엄격책임인 제조물책임과 함께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the concept of a contract with protective duties in relation to third parties)(주: 제조업자에게 해당 제조물을 구매한 소비자를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로부터 보호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는 계약으로 이해됨)도 인정되고 있음(EG-NTF(2019), p. 37, 각주 96)

99) EG-NTF(2019), p. 39; EG-NTF(2019)는 Operator를 'the person who is in control of the risk connected with the operation of emerging digital technologies and who benefits from their operation'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상 운전자 개념과 유사하다. 자배법상 운행자는 자동차 운행에 대한 위험을 지배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를 의미한다. 위험원에 대한 지배와 이익을 근거로 위험원이 야기한 사고에 대한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법 영역에서는 위험책임, 보상책임 등으로 불리며, 과실책임 원칙의 예외로 인정되어 온 것이다. 이를 AI 사고에 대해서도 적용하여, AI 운영 관련 위험을 통제하고 그 운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를 AI의 운영자로 지정하여 사고 발생 시 그 운영자가 과실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다. EG-NTF(2019)는 공공장소에서 활용되고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경우 운영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할 것을 제안한다. 만약 복수의 운영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기술의 활용을 주로 결정하고 이득을 얻는 프런트엔드 운영자(Front-end operator), 관련 기술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정의하면서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백엔드 지원을 하는 자(Back-end operator) 중 운영 위험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갖는 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통상적인 경우 프런트엔드 운영자가 더 많은 통제권을 갖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입법자가 엄격책임을 지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제조업자의 경우 기존 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엄격책임을 부담하고 있는바, 이러한 제조업자의 엄격책임은 AI 사고 피해 구제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AI는 적응성을 가지므로 AI 제조업자는 제품 유통 이후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며, AI 제조업자가 업데이트 및 업그레이드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품 공급 시점을 기준으로 한 ‘개발 위험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는다. AI 기술의 특성으로 인해 제조물책임 성립 요건 입증에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입증책임은 전환하거나 완화되어야 한다.

라) 과실책임(운영자 및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EG-NTF(2019)는 엄격책임 도입 여부와 별개로 일반적·포괄적 책임법제인 과실책임을 AI 사고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실책임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과실의 근거가 되는 주의의무를 확정할 필요가 있는바, EG-NTF(2019)는 AI 운영자 및 제조업자의 주의의무의 내용을 제안한다.

운영자는 적합한 시스템 선택, 시스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관련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이때 주의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제법에서 정해질 수도 있고, 법원 판례에 의해 구체화될 수도 있다. 예컨대 EU AI Act에서 고위험 AI 개발 및 활용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

한 경우, 이를 위반하였다면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제조업자는 운영자가 시스템의 선택, 모니터링,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설계, 설명, 판매해야 하고, 제품을 유통시킨 후에도 적절히 모니터링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제조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의무를 중첩적으로 부담하게 된다.

마) AI 감독자 책임(사용자책임과 동등한 수준의 자동화기술 운영자책임 부과)

타인을 사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그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6조). 이를 사용자책임이라 하며, 감독자 책임의 일종이다. AI 기술 발전으로 사람을 이용하여 사무에 종사하게 하는 대신 AI를 동일한 사무에 종사하도록 할 수 있다. AI 에이전트가 비서 업무를 대체하고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자를 대신하게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EG-NTF(2019)는 인간 보조자를 고용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사용된 자동화 기술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에게 부과되는 책임은 인간 보조자 활용에 대해 적용되는 감독자 책임 체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사람 대신 AI를 활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람을 사용했을 때 인정되는 것에 상응하는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감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자동화 기술 작동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인간 보조자의 행위를 평가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즉, 기존에 인간이 수행하던 업무를 AI가 대체한 경우 AI 업무 수행 적절성 여부는 같은 조건에서 인간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와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은 AI에 의한 자동화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한 기준이 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를 예로 들어 보자. 자동차 소유자나 운수업체 운영자가 인간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운전하게 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자나 운수업체 운영자는 자배법상 운행자책임 및 민법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EG-NTF(2019)의 제안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나 운수업체 운영자는 인간 운전기사 대신 자율주행시스템을 이용하여 운전한 경우에도 동일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한편, 자율주행시스템에 의한 운전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에는 인간 운전자의 운전 행위를 평가할 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인간 운전자가 실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자율주행시스템도 실수할 수 있고, 인간 운전자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AI도 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안에 따라 AI에 의해 자동화된 영역에 대해 기존의 사용자책임 체계를 적용하고,

AI 작동의 적정성 여부를 같은 상황에서 인간의 행위에 대한 적정성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기존 책임법제 적용으로도 책임 공백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바) 입증책임

입증책임 문제는 AI 사고 피해 구제의 핵심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AI 운영자나 제조업자에게 엄격책임이 부과되더라도 이는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 뿐 그 밖의 요건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고 피해자가 입증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AI 운영자나 제조자 역시 종국적으로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책임 비율에 따라 책임을 최종 배분해야 하므로, 사고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EG-NTF(2019)는 입증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로깅 바이 디자인’, 안전기준 위반 시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책임 완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로깅 바이 디자인(Logging by design)’은 설계 시 AI 운영 관련 정보를 생성·기록하는 수단을 장착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다. 위험 현실화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생성·기록하도록 하되, 로깅의 기술적 실행 가능성, 비용, 대체 수단 활용 가능성, AI가 야기하는 위험의 유형 및 규모, 타인의 권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무 부과 범위를 정해야 하며, 특히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만약 제조업자가 이러한 로깅 바이 디자인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가 생성·기록되지 않았다면 해당 정보를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요건사실은 입증된 것으로 보게 되고, 이로 인해 AI 운영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 제조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AI 관련 ‘로깅 바이 디자인’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자율주행차에 장착되는 정보기록장치이다. 자율주행차 제작사는 자율주행차에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장착할 의무를 부담한다(자배법 제39조의17 제1항). 자율주행차가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그것이 자율주행시스템 오작동 때문인지 여부가 문제 될 경우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에 기록된 정보를 토대로 이를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제작사가 자율주행정보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거나 장치 내에 필요한 정보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자율주행시스템 오작동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이로 인해 자율주행차 운행자가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운행자는 제작사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처럼 로깅 바이 디자인 개념은 AI 관련 사고 원인 규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입증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안은 바로 안전기준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곧바로 고의·과실, 결함,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것이다. AI에 대해서는 활용 영역별로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안전기준이란 AI 사고를 방지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각종 규범력 있는 기준들을 의미한다. 자율주행차에 대해서는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이, 금융 AI에 대해서는 금융 AI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EU AI Act는 고위험 AI에 대한 포괄적 규제를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포괄적 안전규제 위반 여부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결함 등에 비해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크게 덜어주게 된다.

또한 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과관계 및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것을 제안한다. 입증책임을 완화는 입법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AI 기술과 손해 발생 사이의 관련성, 정보 접근 가능성, 피해의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증책임을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을 완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AI 관련 사고 책임 중 과실책임이 적용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주의의무의 수준을 확립해야 하고 그 입증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고비용인 경우에는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복수의 공급자가 계약이나 기타 근거에 의해 상업적·기술적 단위상 서로 구분되는 요소를 제공하였을 때, 여러 개의 상업적·기술적 단위 중 어느 요소가 피해를 유발했는지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잠재적 불법행위자들이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AI 기반 제품이나 서비스는 여러 기술적 수단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바, 해당 제품 및 서비스 공급에 관여한 주체들이 모두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사) 보험 및 보상기금

EG-NTF(2019)는 보험 및 보상기금 관련 방안도 제안하고 있다. 먼저 보험에 관해서는 AI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의 빈도나 심도가 높고, 운영자가 개별 피해자에게 배상하는 것이 어려울수록 의무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통상 의무보험은 엄격책임과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자동차보험이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러한 방식을 AI 사고에 적용할 경우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과 그 책임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의무를 함께 부과하게 된다.

다만 EG-NTF(2019)는 의무보험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AI 운영자의 배상자력을 담보하기 위해 의무보험이 필요한지에 대한 신중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분야별로 의무보험제도 필요 여부가 달리 판단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보상기금은 책임 체계에 의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자동차보험에서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고, 뺑소니, 무보험차와 같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어려운 경우 정부보장사업에 의해 피해자 구제가 이루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한편, 해킹 등 사이버범죄에 의한 피해는 가해자를 특정하여 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노폴트 보상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아) 요약

이상과 같이 EG-NTF(2019) 보고서는 AI 사고 책임과 관련한 기존 책임법제의 한계, AI 책임법제의 기본 전제, AI 책임법제 마련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쟁점 및 각 쟁점에 대한 합리적인 해결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EU AI 책임법에 관한 이후의 논의는 이 보고서에서 다루어진 쟁점들과 제안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4〉 EG-NTF(2019)의 책임법제 관련 쟁점 사항

항목	쟁점	핵심 사항
1	책임법에 대한 신기술의 도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디지털 기술의 복잡성, 불투명성, 개방성, 자율성, 낮은 예측가능성, 데이터 주도성, 취약성은 책임법제에 영향을 미침 이러한 영향은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2	도전에 대한 평가 및 조정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존 책임법은 기본적 해결책을 제공하나, 손해 부담의 불공정, 피해자 보호 미흡, 사법 접근성 저하 문제가 발생 가능함 기존 책임법제에 대한 조정 및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다양한 위험에 대해 단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불가능함
3	책임의 기본 전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사한 위험에 대해서는 유사한 책임 체계가 적용되어야 함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은 병존되어야 하고, 피해자는 복수의 책임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함 일부 디지털 생태계에서는 계약책임 및 다른 보상시스템이 불법행위책임과 함께 또는 이를 대체하여 적용될 수 있음
4	AI 법인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 귀속을 위해 시에 법인격을 부여할 필요는 없음

〈표 IV-4〉 계속

항목	쟁점	핵심 사항
5	운영자의 엄격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지털 신기술이 공공장소에서 운영되고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엄격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엄격책임은 위험을 통제하고 운영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운영자(Operator)에게 귀속되어야 함 • 프런트엔드 운영자(Front-end operator)와 백엔드 운영자(Back-end operator)가 있는 경우 위험에 대해 더 많은 통제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엄격책임을 부과해야 함 • 인간에 의한 통제라는 전통적 개념에 기반한 항변사유나 면책사유는 재고될 필요가 있음
6	제조물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 실체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제조물책임이 인정됨 • 유통 후 결함이 확인된 경우에도 제조업자가 기술의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권한을 가지는 한 제조물책임이 인정되며 개발 위험의 항변은 적용되지 않음 • 안전기준 준수 관련 입증은 현저히 곤란하거나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은 전환되어야 함
7	과실책임 및 주의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자는 적합한 시스템의 선택, 시스템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함 • 제조업자는 운영자가 위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계·설명·판매해야 하고, 유통 후 모니터링해야 함
8	감독자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 보조자를 고용하는 것과 기능적으로 동등한 방식으로 사용된 자동화 기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술에 대한 운영자책임은 인간 보조자 활용에 적용되는 감독자 책임 체계와 일치해야 함 • 자동화 기술의 작동을 평가할 때 인간 보조자의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해야 하며, 자동화 기술이 인간 보조자를 능가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기술의 성능을 기준으로 작동의 적절성을 평가해야 함
9	로깅 바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자는 자동화 기술의 운영 관련 정보를 생성·기록하는 수단을 장차해야 함 • 데이터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정보를 기록해야 함 • 정보가 로깅되지 않았거나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을 불합리하게 제한하는 경우 해당 정보로 입증하고자 하는 요건사실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함 • 위 추정 결과 운영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제조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음
10	안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기준 위반 시 인과관계, 과실, 결함의 존재 등이 입증된 것으로 봄
11	인과관계 입증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손해 원인을 입증해야 함 • 기술이 손해 발생에 미치는 영향,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 기술 관련 알려진 결함, 정보 비대칭, 기록된 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이해 가능성, 피해의 종류 및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시 인과관계 입증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음

〈표 IV-4〉 계속

항목	쟁점	핵심 사항
12	과실 입증책임	• 디지털 신기술 관련 주의의무의 수준을 명확히 하고, 과실의 입증이 지나치게 어렵거나 입증에 과도한 비용이 드는 경우 입증책임을 전환해야 함
13	피해자 측 과실	• 피해자 측 과실은 손해배상액 감액 사유가 됨
14	상업 및 기술 단위	• 서로 구분되는 상업 및 기술 단위를 공급하는 복수의 공급자가 존재하고, 이들이 공급한 요소 중 어느 하나가 피해를 야기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소가 피해의 원인인지가 불분명한 경우, 모든 공급자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해야 함 • 상업 및 기술 단위는 공동마케팅 여부, 각 요소의 기술적 상호 의존성 및 상호작용 정도, 독점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15	공동불법행위자 간 책임 배분	• 공동불법행위자들은 연대책임을 부담하되, 과실비율이 확인되는 경우 그에 따라 구상 청구가 가능함
16	데이터 관련 손해	• 데이터에 대한 침해는 계약상 책임이 있는 경우, 다른 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침해 행위가 형사 범죄행위에 해당하거나 관련 법규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책임이 인정됨
17	보험	• 사고의 빈도나 심도가 높고, 책임자가 피해자에게 개별적으로 배상을 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 의무보험이 적합할 수 있음
18	보상기금	• 책임법과 보험에 따라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보충적인 피해자 보호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음

자료: EG-NTF(2019), pp. 32~63의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함. 번역은 황현아(2024a), pp. 136~142에 따름

2) 2020년 EU 집행위원회 보고서 발표 및 EU 의회 결의

가) EU 집행위원회 보고서

2020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AI 백서를 발간하면서, 그 부속 보고서로 AI 책임법제에 관한 보고서인 “Report on the safety and liability implications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Internet of Things and robotics”(이하 ‘EC(2020)’라 함)를 EU 의회에 제출하였다. 동 보고서는 AI, 사물인터넷(IoT), 로봇틱스 등 신기술이 가져올 안전(Safety)과 책임(Liability) 관련 이슈를 제시한다.

EC(2020)는 EU의 책임법제를 EU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책임법제인 제조물책임과 회원국에서 개별적으로 정하는 책임법제인 불법행위책임 및 기타 엄격책임으로 구분한다. EU 회원국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공통 법제인 제조물책임과 개별 법제인 불법행위책임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며 피해자를 구제하고 있다. AI 사고에 대해서도

이러한 이중의 책임법제가 적용된다.

그런데 AI, IoT, 로봇릭스 등 관련 사고의 경우 연결성(Connectivity), 자율성(Autonomy), 데이터 의존성(Data dependency), 학습 능력(Self-learning), 복잡한 공급망, 사후 업데이트 가능성, 알고리즘의 불투명성(Opacity), 사이버 위협 등 기존의 사고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고, 그 결과 기존의 책임법제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EC(2020)는 안전 측면에서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안전 및 보안을 고려하도록 하는 Safety by design, Security by design을 제안하는 한편, 책임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주체 확대, 엄격책임 도입, 입증책임 전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책임법제 관련 제안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조물책임의 경우 적용 범위에 소프트웨어 등을 포함하고 '시장 출시' 개념을 AI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국가별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AI 사고에 적용 시 책임의 요건을 입증하기 어렵거나 입증에 지나치게 과도한 비용이 소요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기준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의 존재를 추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 한편 불특정 다수의 생명·신체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특정 분야의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책임 부과 및 필요성 및 보험가입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EC(2020)가 AI 사고 책임법제로 엄격책임 및 의무보험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제안한 것은 AI 사고의 피해자를 기존의 다른 사고 피해자와 동등하게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한 것이다. AI 사고는 기존의 다른 사고에 비해 책임주체가 불분명하고 고의·과실 및 인과관계 입증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특성으로 인해 AI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은 그 자체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저하 및 AI 기술 보급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한편 책임법제를 명확히 하는 것은 AI 개발자 및 사업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AI 사고에 대한 책임의 요건 및 범위가 불분명할 경우 불확실성이 높아져 투자를 저해하고 정보 비용 및 보험 비용의 증가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EC(2020)는 AI 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피해 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피해자 보호뿐 아니라 기술 및 산업 발전, 나아가 AI 생태계 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를 위해 입증책임 전환, 엄격책임 부과 및 의무보험 도입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나) EU 의회 결의안

EU 의회는 2020년 10월 AI에 대한 책임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입법 결의안 EP(2020)를 채택하였다.¹⁰⁰⁾ 동 결의안은 (i)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자에게 엄격책임(Strict liability)을 부과하고, (ii)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며, (iii) 피해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iv)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해 작동 이력, 결정 과정, 학습데이터 등을 기록하고 저장할 의무를 부과하며, 법원이 증거 공개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¹⁰¹⁾ 이 결의안은 뒤에서 살펴볼 AILD의 입법적 근거가 되었다.

동 결의안은 EU AI Act의 고위험 AI 개념을 전제로 고위험 AI 운영자에게 엄격책임 및 보험가입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EG-NTF(2019) 및 EC(2020)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의 일반 원칙인 과실책임 원칙을 수정하여 보다 무거운 책임인 엄격책임을 부과하고, 고위험이 아닌 AI에 대해서는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 체계는 새로운 것은 아니며, EU 회원국은 물론 우리나라 및 주요국들은 모두 중요한 위험원에 대해 별도의 책임법제를 마련하여 엄격책임을 적용하고 있다. 실제 EP(2020)가 제안한 방안은 자동차 사고에 대한 운전자책임 및 의무보험제도와 매우 유사하다.

결의안 발표 당시만 해도 동 결의안에서 정한 고위험 AI 시스템 요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보험제도는 장래 기술 발전에 대비하는 성격이 강했다. 다만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보험료가 지나치게 높게 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EU 차원의 사전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신기술 위험을 담보하는데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데이터 부족 및 보험료 산출 곤란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 AI 운영자들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보험상품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EU 집행위원회가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력할 필요가 있고, 공공 기금을 활용한 피해 보상 공백 해소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다.¹⁰²⁾

100) 정식 명칭은 Civil liability regim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uropean Parliament resolution of 20 October 2020 with recommendations to the Commission on a civil liability regim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2020/2014(INL))임. 위 결의안은 INL(Own-Initiative Legislative Resolution)에 해당하되, INL은 EU 의회가 EU 집행위원회에 법안의 제안을 요청하는 성격을 가지며, 법적 구속력은 없음

101) 참고로 김진우(2021b)에는 EP(2020) 결의안에 대한 번역문이 별첨으로 수록되어 있음

102) EC(2020), p. 7

3) 2022년 PLD 개정안 및 AILD 제정안 초안 발표 및 이후 경과

EU 집행위원회는 2022년 9월 PLD 개정안 및 AILD 초안을 패키지 형태로 제안하였다. 앞서 EC(2020)에서 본 바와 같이 AI 사고에 대한 EU의 책임법제는 회원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PLD와 회원국 개별법에 따르는 불법행위법으로 구성되고, 양자는 중첩적으로 적용되며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한다. EU 집행위원회가 PLD 개정안과 AILD 제정안 초안을 함께 발의한 것은, EU 공통 법제인 PLD를 AI 사고에 적합하게 수정·보완하는 한편 회원국 개별 법제인 불법행위법에 대해서도 EU 차원의 일관된 기준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다. 즉 PLD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라 AI 사고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AILD를 통해 일반 불법행위책임을 통해서도 피해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AI 사고에 대해서는 엄격책임과 과실책임이 병용되어야 한다'고 본 EG-NTF(2019)의 입장과의 연결된다.

개정 PLD 초안은 제조물책임의 대상인 제조물의 범위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실패나 사이버보안상의 문제도 결함에 해당한다는 점, 재조합된 제품도 제조물에 해당한다는 점, 안전기준 위반의 경우 결함의 존재를 추정한다는 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였다. 제안 이후 PLD 개정 논의는 신속하게 진행되어 일부 추가적인 수정·보완이 이루어졌고, 수정안에 대해 2023년 EU 의회와 이사회의 잠정 합의가 이루어졌다.¹⁰³⁾ 이후 2024년 10월 최종 개정안이 공식 채택되어 11월 18일 관보에 게재되었으며 12월 8일 개정 PLD가 정식 발표되었다. 회원국들은 2026년 12월 9일까지 PLD의 취지에 따라 자국의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AILD 초안은 EP(2020)의 제안에 비해 상당히 완화된 형태로 마련되었다. 고위험 AI 시스템 운영자에 대한 엄격책임이나 의무보험제도는 반영되지 않았고, 입증책임 완화 및 전환에 관한 사항만 반영되었다. 이처럼 완화된 내용으로 초안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ILD 초안은 제안 시부터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주된 반대 의견은 기존 책임법제의 수정·보완으로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고, 새로운 책임법제를 도입하는 것은 복잡성만 추가하는 입법 과잉이라는 점이었다. 반면 AILD는 반쪽짜리 접근이며 EP(2020)에서 제안된 엄격책임 도입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다.¹⁰⁴⁾ 초안이 발표된 지 2년이 경과한 2024년 12월, EU 의회의 법제사법위원회(JURI) 논의를 거쳐

103) 개정 PLD의 내용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봄

104) Hacker(2023), p. 1;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2024), p. 3

2025년 1월 공청회가 개최되었으나, 2025년 2월 EU 집행위원회는 AILD를 공식적으로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¹⁰⁵⁾ 철회 배경으로는 프랑스 주도의 반대 연합, EU 기관들 간 내부 의견의 충돌, 드라기 보고서 이후 EU 경쟁력 확보를 우선하는 정책 기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¹⁰⁶⁾ 한편, 애초부터 AILD 제정 기반이 불안정하여 철회 결정은 놀라운 일이 아니며, EU 회원국들의 기존 책임법제 체계를 통해 AI 사고에 대응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¹⁰⁷⁾

다. 개정 PLD 주요 내용

1) 책임 범위 확대

개정 PLD는 제조물, 결합, 책임주체의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책임 범위를 확대하였다.

가) 제조물에 AI 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포함

개정 PLD는 제조물의 범위에 소프트웨어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PLD Article 4(1)). 이때 소프트웨어에는 AI 시스템이 포함되며, 독립형 소프트웨어, 내장 소프트웨어, 장치에 저장된 소프트웨어, 통신 네트워크나 클라우드 기술을 통해 접근되는 소프트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서비스 모델을 통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등 사용 방식을 불문한다. 개정 PLD는 AI Act에서 정하는 AI 시스템 공급자는 소프트웨어 제조업자로서 제조물책임의 주체가 된다는 점을 전문에서 명시하였다(PLD 전문: (13)). 다만 미디어 파일이나 전자책 같은 디지털 파일의 콘텐츠나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는 제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PLD 전문: (13)).

105) EC(2025) p. 26(집행위원회는 현재 제안된 AILD에 대해 합의 가능성이 없다고 밝히고, 다른 제안을 제출할지 또는 다른 접근 방식을 선택할지 여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하였음)

106) Brian McElligot and Leona Chow(2025); Mason Hayes & Curran(<https://www.mhc.ie/latest/insights/ai-liability>) (2026. 2. 4. 최종 접속)

107) M.N. Duffourc(2025); 동 보고서는 AI 사고 피해 구제는 탐다운 방식보다 바텀업 방식에 의한 접근이 더 효과적일 수 있고, AI 사고에 대해 각국의 법 전통, 판례, 문화적 맥락, 공정성·합리성·비례성 등의 법원칙의 폭넓은 적용이 요구된다고 보면서, "AILD는 기대에 미치지 못했지만, 공정하고 효과적인 AI 책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평가함; Maastricht University(<https://www.maastrichtuniversity.nl/blog/2025/02/withdrawal-ai-liability-directive-critical-reflection-ai-liability-eu>) (2026. 2. 4. 최종 접속)

한편 비상업적 활동 중 개발되거나 제공되는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제조물책임이 적용되지 않는다(PLD Article 2). 무료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시장에서의 연구와 혁신에 기여하는 것이므로, 시장에 제품을 출시하는 행위와는 구별된다고 본다(PLD 전문: (14)).

나) 결함 여부 판단 시 디지털 신기술 특성 고려

기존의 제조물책임은 제품이 시장에 공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제조물의 결함 여부를 판단하였고, 당해 제조물 자체에 결함이 있는지 여부만이 고려대상이었다. 반면 개정 PLD는 결함 여부 판단 시에 AI 시스템을 비롯한 디지털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함 판단 시점 및 고려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즉, 결함 여부를 판단할 때 ① 제품 출시 이후의 학습이나 성능 개선이 제품에 미치는 영향, ② 상호 연계되어 활용할 것이 예상되는 다른 제품이 당해 제품에 미치는 영향, ③ 제품의 출시 및 사용 시점, 제조업자가 제품에 통제권을 유지하는지 여부 및 제조업자가 제품을 더 이상 관리하지 않게 되는 시점, ④ 사이버 보안 요건을 비롯하여 제품 안전 관련 규제 사항, ⑤ 관할 당국에 의한 제품 리콜 등 행정 조치 여부, ⑥ 제품이 적용되는 사용자 그룹의 특수성¹⁰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PLD Article 7).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 AI 시스템의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제품에 실질적인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 그 변경 시점에 시장에 제공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PLD 전문 (40)). 이와 같은 결함 판단 기준 및 판단 시점에 관한 규정들은 제조물책임의 인정범위를 보다 확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제품에 대한 리콜이 실시되었다는 점이나 제품에 대한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를 포함하여 더 나은 제품이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만을 이유로 제품의 결함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힘으로써 결함의 범위가 불합리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였다(PLD 전문 (34), (35)).

다) 제조물책임주체 확대

개정 PLD는 제조물 책임을 부담하는 책임주체의 범위도 확장하였다. 기존에 책임을 부담하던 제조업자와 준제조업자 외에,¹⁰⁹⁾ 결함이 있는 부품의 제조업자의 경우 해당 부품이

108) 예컨대 생명유지장치의 경우 사용자의 건강상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결함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PLD 전문 (30))

제품에 통합되었거나 제품과 상호 연결된 경우에는 경제적 운영자(Economic operator)로서 제조물책임을 부담한다. 이미 시장에 출시되었거나 서비스에 투입된 제품을 현저하게 수정하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도 제조업자로 간주된다. 또한 유럽 연합 내에서 책임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 결합 제품 유통업자나 온라인 플랫폼 제공자도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정하였다(PLD Article 8).

2) 입증 부담 완화

개정 PLD는 피해자가 제조물책임 성립의 개연성을 입증하면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결합 여부 판단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기술적·과학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간접적 사실만으로도 결합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제조업자의 자료제출의무

제조물책임은 제조업자의 고의·과실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격책임의 일종이나,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물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피해자의 입증 부담은 여전히 남는다. 자동차, 가습기살균제, 담배 등 관련 제조물책임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결함 및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첨단기술이 적용된 제조물의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 입증 곤란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입증 곤란성이 AI 사고 피해 구제에 현실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점은 EU의 AI 사고 책임법제 논의의 전 과정에서 핵심적인 쟁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개정 PLD는 소비자 측이 배상 청구의 개연성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과 증거를 제시한 경우, 제조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법원에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였다(PLD Article 9(1)). 다만 자료는 청구와 관련된 것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및 정보보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였다(PLD Article 9(4)).

109) 제조업자는 제품을 개발(Develop), 제조(Manufacture), 또는 생산(Produce)하는 자를 의미함. 준제조업자는 제조업자는 제품을 설계 또는 제조하도록 하였거나, 그 제품에 제조자의 이름, 상표, 또는 그 밖에 그 제품만의 특성을 넣어서 자신이 제조자임을 표시한 자를 의미함

나) 결함 추정 규정 신설

개정 PLD는 기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라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가 부담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제품의 결함에 대한 추정 규정, 결함과 손해의 인과관계에 대한 추정 규정을 신설하였다(PLD Article 10).

우선, (i) 법원이 제조업자에게 증거 공개를 요청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ii) 제조업자가 EU 및 회원국 법령에서 명시된 필수적인 제품 안전 기준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iii) 합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제품을 이용하던 중에 제품의 명백한 오작동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품의 결함이 추정된다(결함의 추정). 제품의 결함이 인정되고, 그 결함으로 초래된 피해가 일반적으로 그 결함으로 인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종류의 것이라면 인과관계가 추정된다(인과관계 추정). 특히 AI 등 신기술 적용 제품의 입증 곤란성을 고려하여,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Technical or scientific complexity)'으로 인해 제품의 결함 및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에 '과도한 어려움(Excessive difficulties)'이 발생하는 경우, 결함 및 인과관계를 추정하도록 하였다(결함 및 인과관계 추정). '기술적 또는 과학적 복잡성' 및 '과도한 어려움'의 의미는 불분명하고 회원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의미가 밝혀질 예정일 것으로 보인다.

라. AILD 초안 주요 내용¹¹⁰⁾

1) 제안 설명

가) 제안 배경(공평한 피해자 보호 및 법적 불확실성 해소)

AI 사고 책임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은 EU 회원국 기업들의 AI 활용에 장애 요소로 꼽히고 있다. AI의 복잡성, 자율성, 불투명성과 같은 특성들은 기존의 불법행위책임 요건인 고의·

110) 이하의 내용은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AILD 초안 제안서인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adapting non-contractual civil liability rules to artificial intelligence"의 주요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임. 원문을 그대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의미와 가독성을 고려하여 요약·정리한 것이어서 번역문과는 차이가 있음. 원문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저자의 의견이나 해설은 각주로 기재함. AILD의 경우 최종 법안의 내용보다 그 내용의 도출 과정이 중요한바, 제안 설명 부분의 내용을 충실히 전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요약·정리를 진행함

과실 및 인과관계의 입증을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에서 EU 회원국 법원에 AI 사고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피해자에게 공평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안의 특성에 맞게 기존 법제를 탄력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게 될 것이다.¹¹¹⁾ 회원국의 법원들이 이처럼 저마다 개별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기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여러 국가에 제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 회원국들이 개별적으로 AI 사고 책임에 대한 입법적 조치를 취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EU 차원의 통일된 AI 사고 책임법제를 마련함으로써 AI를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한편 AI 사고 피해자들이 일반적인 불법행위 피해자들과 동등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이 지침을 제안하였다.

AI Act 초안¹¹²⁾은 AI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 안전과 책임(Safety and liability)¹¹³⁾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적용되는 시점은 다르지만 상호 간에 강화 작용을 한다. 안전에 관한 규제법¹¹⁴⁾은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따라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에는 책임법제가 적용된다. 책임법제는 안전에 관한 규제법을 준수해야 할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도 한다. AILD와 PLD는 패키지 법제로서, 제품의 결함에 대한 책임은 PLD를 통해 규율하고, 그 밖의 일반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AILD를 통해서 규율한다. 이러한 책임법제를 통해 안전에 대한 규제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효과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번 지침은 이해관계자의 법적 불확실성을 낮추고, 특히 중소기업이 국경을 넘어 새로운 시장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약 5억 유로~11억 유로의 시장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AI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제고하고 AI 사고 관련 사법시스템 접근성을 높이는 등 사회적인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회적 신뢰 증가는 AI 가치 사슬에 속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이익이 되고, 건강 및 안전의 증진을 통해 EU 시민 전체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111) 기존 불법행위법의 요건은 고의·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등 추상적으로 정해져 있어 법원의 판단의 여지가 상대적으로 큰바, 법원은 개별 사건의 피해자에게 가장 공평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음

112) AILD 초안 제안 당시인 2022년 9월에는 AI Act 초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었음

113) “Safety and liability”는 규제법인 AI Act와 책임법인 AILD 및 PLD의 연계성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규제법과 책임법의 상호 보완성을 압축적으로 드러냄

114) 원문은 “rules to ensure safety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이며, AI Act를 의미함

나) 법적 근거, 보충성 및 비례성

AILD는 EU가 EU 역내 시장을 형성하고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TFEU(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Article 114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AI 책임법제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은 EU 역내 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며,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의 국경 간 무역에 장애가 된다. 특히 비계약적 책임인 일반 불법행위책임은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바,¹¹⁵⁾ 기업들 입장에서는 관련 책임과 위험을 미리 알고 이에 대해 보험 등을 통해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AI 책임법제에 관한 법적 불확실성은 개별 회원국의 독자적 입법으로 인한 법적 분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체코, 이탈리아, 몰타, 폴란드, 포르투갈 등에서 채택된 AI 전략은 책임법제를 명확히 하겠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개별적 입법은 법적 분열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이처럼 개별 회원국 차원의 대응은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 도입에 장애가 되고 법적 분열을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되는바, TFEU Article 114에 따른 조치가 요구된다. EU 차원의 조치는 개별 국가 차원의 조치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어야 하는바, AI 사고 책임법제는 이러한 보충성(Subsidiarity)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본 지침은 비례성(Proportionality)¹¹⁶⁾을 준수하기 위해 최소한의 개입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즉, 입증책임 관련 조치를 먼저 채택한다. 현재 회원국 국내법상 일반 불법행위책임 성립 요건에 해당하는 고의·과실, 인과관계 등의 요건을 AI 사고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요구하되, 입증 곤란성으로 인해 AI 사고 피해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입증책임에 대한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입증책임 관련 조치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조치인 반증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채택한다.¹¹⁷⁾ 이러한 반증 가능한 추정은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것으로, 원고와 피고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본 지침은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주의

115) 계약책임의 경우 계약 당사자들이 합의에 의해 준거법(계약의 해석 및 적용에 적용될 법률)이나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는 반면,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경우 당사자들이 사전에 준거법이나 관할을 정하는 것이 어려움

116) 법적 조치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범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임

117)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법으로는 입증책임 자체를 전환하는 방법(입증책임 전환), 간접사실 증명 시 요건사실이 입증된 것으로 보고 반증을 허용하지 않는 방법(간주 규정), 간접사실 증명 시 요건사실을 추정하되 반대 증거를 통해 그 추정을 반박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추정 규정) 등이 있음. 피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은 곧 가해자의 지위에 있는 불법행위자의 책임을 보다 쉽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잠재적 가해자에 해당하는 AI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음. 이에 EU는 가장 낮은 수준의 입증책임 완화 방안인 반증 가능한 추정을 채택한 것임

의무 수준에 대해서는 기존의 EU 및 회원국 국내법 기준에 따르도록 한다. 이처럼 비례성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AI 시스템 제공자, 운영자 및 이용자가 과도한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우선적으로 이러한 조치를 취하여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그 효과를 평가하여, 엄격책임이나 의무보험 등 더욱 강한 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다시 판단하기로 한다.

한편, 본 제안의 형식으로 법적 효력이 없는 권고(Recommendation), 지침(Directive), 규정(Regulation) 등이 고려되었으나,¹¹⁸⁾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면서도 개별 회원국의 책임 법제와 마찰 없이 통합할 수 있도록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침(Directive)의 형식을 채택한다.

다) 관련 연구,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입법 영향 평가

EU는 2018년 EG-NTF를 구성하여 AI 책임법제에 대한 준비 작업을 시행하였고, AI 책임 법제 관련 주요 쟁점에 대한 평가 보고서인 EG-NTF(2019)를 제출하였다. EG-NTF(2019)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i) EU 불법행위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¹¹⁹⁾ (ii) 책임법제가 소비자의 의사결정, 특히 AI 기반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신뢰와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다룬 행동경제학 연구,¹²⁰⁾ (iii) AI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의 곤란성의 정도, 기업이 느끼는 AI 책임법제의 불확실성의 정도 및 불확실성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 책임법제의 분열이 EU AI 제품 및 서비스 시장에 미치는 영향, AI 책임법제 마련이 EU 기업들의 AI 기술 채택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경제학 연구¹²¹⁾ 등을 수행하였다.

또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위해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2년 1월 10일까지 소비자, 시민단체, 산업별 협회, 중소기업을 포함한 기업,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았고, 21개 회원국 및 제3국에서 233개의 응답이 접수되었다. 응답자들의 다수는 AI 사고 관련 입증책임의 문제, 법적 불확실성 및 법제 분열의 문제들에 공감하였고, EU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지하였다. 시민단체 및 학술기관은 피해자의 입증책임 완화를 위한 EU 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적극 지지하였다. 기업들은 책임법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

118) 권고(Recommendation)는 법적 효력이 없고, 지침(Directive)은 회원국이 지침의 취지에 따라 국내법을 개정할 의무를 부과하고, 규정(Regulation)은 그 자체로 곧바로 회원국에 적용됨. AI 윤리 가이드라인은 권고에 해당하고, PLD는 지침에 해당하며, GDPR 및 AI Act는 규정에 해당함

119) Ernst Karner, Bernhard A. Koch and Mark A. Geistfeld(2021)

120) Kantar(2021)

121) Deloitte(2021)

를 나타내면서도, 혁신을 제한하지 않기 위한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였다.

EC는 (i) 입증책임 완화 방안, (ii) 입증책임 완화에 더하여 특정한 위험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엄격책임 및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iii) 먼저 (i)의 조치를 취한 후 재검토를 거쳐 (ii) 도입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에 대해 입법 영향 평가를 실시하였다. 입법 영향 평가는 효과성, 효율성, 일관성, 비례성을 고려한 다기준 분석(Multi-criteria analysis)에 의하였고, 그 결과 (iii)의 방안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초안 내용

AILD 초안은 AI에 기인한 손해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 인과관계를 추정한다(AILD Article 4). 고위험 AI의 경우 원칙적으로 추정이 적용되고 다만 AI Act에 따라 설계, 개발된 경우에는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위험 AI 이외의 경우에는 인과관계 입증에 지나치게 곤란하다고 법원이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추정이 인정된다. 한편 고위험 AI의 로깅 등에 대해서는 증거 공개 절차가 도입되어, 원고가 손해배상청구의 타당성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사실 및 증거를 제시한 경우에는 법원이 고위험 AI 시스템 제공자에게 증거 공개를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AILD Article 3).¹²²⁾

이처럼 AILD 초안에는 기존 EG-NTF(2019)에서 논의된 내용 중 인과관계 추정 및 증거 공개 절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운영자의 엄격책임 및 의무보험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AILD 초안의 제안 설명에 따르면 AI 사고 관련 책임 중 엄격책임은 기존 제조물책임 법리에 따라 PLD에서 다루고, AILD는 과실책임을 전제로 마련되었으며, AILD에 AI 운영자의 엄격책임을 도입할 것인지 여부는 추후 논의할 방침이라고 한다.¹²³⁾

122) 이에 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신봉근(2023), p. 222를 참조 바람

123) European Commission, "Proposal for a AILD", p. 14

5. 시사점

가. AI 사고 피해 구제 논의의 필요성

EU의 AI 사고 피해 구제 관련 논의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첫째, AI 사고 피해자가 다른 사고 피해자보다 피해 보상에 있어서 더 불리한 지위에 놓여서는 안 되고, AI 사고에 대한 책임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불법행위법이 추구하는 목적인 피해의 회복 및 공평한 책임 배분이 AI 사고 영역에서도 달성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EU 역내 시장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해 AI 사고에 대한 통일성 있는 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회원국마다 개별적으로 법원 판례에 의한 법리 형성 및 입법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EU 역내 시장의 기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EU가 다른 나라에 앞서 선제적으로 포괄적인 AI 책임법제 도입을 추진하게 된 주된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다. EU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포괄적 법제인 GDPR을 제정하여 역외 기업에도 이를 적용하자 다른 나라들이 모두 EU의 기준에 따라 자국의 개인정보 보호 법제를 마련한 ‘브뤼셀 효과’가 AI 법제 영역에서도 작동하기를 기대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 사고 시 피해자를 구제하고 공평하게 책임을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문제에 관한 EU의 논의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적극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반면 역내 시장의 형성 및 유지를 위한 선제적·통일적 기준 마련의 필요성은 EU의 특수한 사정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일본 등의 경우 AI 사고 책임에 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입법적 조치로 나아가는데 보다 신중을 기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제도적 환경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미국의 경우 연방 차원의 통일된 입법적 조치에 대한 요구가 없는 것은 아니나,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우선하는 정책의 영향으로 입법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EU의 논의를 참고하여 AI의 특성 및 그로 인한 AI 사고의 특수성을 파악하고 AI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피해 구제 체계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는 입법 자체를 서둘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계 최초’ 같은 수사나 ‘피해자 보호’ 같은 이념이 앞설 경우 자승자박의 결과를 낳게 될 우려가 있는바, 논의는 신속히 하되 입법 자체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 AI 사고 책임법제 논의의 전개 과정

EU의 AI 사고 피해 구제 관련 논의는 초기에는 전자인 제도 도입과 같은 급진적인 제도 변화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시선을 끌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

논의 초기인 2017년에는 AI 사고에 대한 책임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전자인(電子人, e-Person)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EU 의회에서 관련 제도 도입에 관한 결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AI 사고 책임법제 논의가 본격화된 2020년 무렵부터는 EG-NTF(2019), EC(2020), EP(2020) 등 EU의 전문가 및 지도자 그룹은 일관되게 AI 사고 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자인 제도를 도입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대신 AI 사고 책임법제 문제를 제조물책임법과 일반 불법행위법의 상호 보완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

제조물책임법의 경우 결함을 책임의 근거로 삼는 기본 틀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기술 발전 상황에 맞게 소프트웨어도 제조물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책임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졌다. 반면 일반 불법행위법의 경우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AI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AI Act 제정 과정에서 '위험기반 접근법'이 채택되며, 책임법제 측면에서도 이러한 위험기반 접근법을 반영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위험성이 높은 AI가 유발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 체계가 요구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 및 의회는 고위험 AI에 대해서는 엄격책임과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고 그 밖의 AI 사고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인 기존 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되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고위험 AI에 대해 적용되는 엄격책임과 의무보험제도는 현재 자동차 사고에 적용되는 운전자책임 및 자동차책임보험을 모델로 하여 마련되었다.

그러나 고위험 AI에 대해 엄격책임 및 의무보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은 다양한 반발에 부딪혔고, 2022년 발표된 AILD 초안에는 고위험 AI에 대한 엄격책임 및 의무보험제도는 포함되지 못하였다. 이후 딥시크 쇼크 및 AI 관련 국가 간 경쟁의 심화 등으로 인해 AI 책임법제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커졌고, 이미 발효된 AI Act의 시행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AILD는 더욱 힘을 잃게 되어 결국 철회되기에 이르렀다.

신기술이 야기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때 초기에 급진론이 우세하다 이후

신증론으로 전환되는 것은 익숙한 현상이다. 자율주행차 관련 책임법제 논의도 이와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 자율주행차 책임법제 논의 초기에는 자율주행차의 위험성, 제조업자의 책임성, 운전자의 책임 제한 필요성이 강조되면서, 자율주행차 사고에 대해서는 무조건 제조업자가 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는 다소 급진적인 견해가 제기되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 오류나 해킹 위험성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기업이란 이윤만 추구하고 책임은 회피하려는 성향이 있으므로 사전에 책임을 못 박아 두지 않으면 국민 전체에게 손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는 이러한 급진적 견해를 확산시키는 양분이 되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검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조율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급진적 대응 방안이 실제 피해자 구제에 효과적이지도 않고, 법리상으로도 문제점이 많으며, 자율주행차 기술 및 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다. 자율주행차 사고 책임 문제는 오랜 논의 과정을 거쳐 기존의 운행자책임과 자동차보험을 일부 보완하여 활용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으나, 자율주행차의 발전 단계에 따른 재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는 상황이다.

AI 책임법제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기본법이 시행되었고, 전자인 제도 도입이나 AI 책임법에 관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기도 하였다. 논의 과정에서 AI 관련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과해야 한다거나,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대하며 신증론을 제기하거나 기술 개발 및 산업 진흥을 강조하는 것은 AI의 위험성을 외면한 주장으로 치부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때 EU의 사례, 특히 2017년 전자인 제도 관련 EU 의회 결의부터 2025년 AILD 초안 철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이루어진 구체적인 공방의 과정과 내용은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다. AI 사고 피해 구제 체계

EU의 PLD는 기존의 제조물 결함으로 인한 사고에 대한 책임이라는 기본 틀을 유지하며 AI 사고에 적합하도록 일부 수정·보완을 하는 것으로 개별적 대응에 해당한다. 반면 AILD는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는 AI 사고를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대응에 해당한다. AI 사고에 대한 사후적 대응은 포괄적 대응과 개별적 대응이 모두 가능하므로, EU에서 포괄적 대응 체계로서 AILD 도입을 추진한 것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AI 사고에 대해 포괄적 대응 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현실적·제도적 여건이 갖추어졌는지 여부이다.

PLD와 AILD는 처음에는 상호보완적인 패키지 법안으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PLD가 당초 의도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개정이 완료된 것과 달리 AILD는 논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고위험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엄격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부과가 법안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AILD 초안은 입증책임 완화로 대폭 축소되어 발표되었으며, 그마저도 철회되었다. 이처럼 PLD와 AILD가 함께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결과에 이른 것은 개별적 대응과 포괄적 대응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AI가 도입 초기 단계인 점, AI의 범용성으로 인한 사고 범위 및 피해 범위의 광범위성 등을 고려할 때, 모든 AI 사고에 적용될 수 있는 하나의 포괄적 책임법제 및 보험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다고 생각된다. AI는 ‘자율성’, ‘적응성’ 같은 독특하고도 중요한 특성을 가지고, 기술의 ‘범용성’으로 인해 국민의 생활과 산업의 거의 전 영역에서 활용됨에 따라 사고 유형이나 침해되는 법익도 다양하다. 따라서 이러한 독특하고 광범위한 ‘AI 사고’를 하나의 책임법제와 보험제도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적어도 AI 시대에 이제 막 진입하는 현 단계에서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논의가 충분히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EU의 AILD 입법이 관철되지 않고 철회된 것이 오히려 다행스럽게 여겨지기도 한다. EU의 입법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즉각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고려할 때, EU에서 AILD가 통과되었다면 우리나라도 서둘러 인공지능 책임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봇물 터지듯 제기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 소결

EU의 사례는 AI 책임법제 논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논의가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는지, 포괄적 책임법제 도입이 현실점에서 가능하고 적절한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I 책임법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EU의 사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된다.

첫째, AI 책임법제 문제는 하루아침에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검토와 논의, 기술 및 산업 발전 상황에 대한 고려, 국제적 동향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AI 활용이 확대되고 그에 따른 위험과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전격적인 입법을 통해 이러한 위험과 불확실성에 대처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론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도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법에서 다루는 대상의 존재나 특성 자체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에 대한 법제를 선제적으로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위험하다.

특히 기존에 개별 영역에서 작동하고 있는 사후 구제 체계를 폐기하고 이를 대체하는 포괄적 피해 구제 체계를 수립하는 방식의 대응은 위험과 불확실성을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증폭시킬 수 있다.

둘째, EU가 거쳐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가 거쳐야 할 논의의 과정을 보다 압축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AILD 초안이 비록 철회되기는 하였으나 AILD 초안 작성 및 철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논의들, 특히 AILD 입법론자들이 가졌던 공평한 피해자 구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주목할 가치가 있다. EU AILD 논의 과정은 우리나라가 거쳐야 하는 시행착오 과정일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입법이 곧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일 수 있다. 따라서, EU의 논의 과정과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과정을 단축하는 데 활용할 필요가 있다.